알 려 드 립 니 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 전시관 운영 안내

-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ptmom2-dmapt.co.kr)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주택전시관 관람 및 사전 서류제출은「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주택전시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031-651-7733)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 계약 체결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주택전시관 내 분양상담 전화(☎031-651-773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고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table>
<tr><th>당첨된 주택의 구분</th><th colspan="3">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th></tr>
<tr><td>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td><td colspan="3">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td><td colspan="3">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td><td colspan="3">5년간</td></tr>
<tr><td rowspan="4">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td><td rowspan="2">과밀억제권역</td><td>85㎡이하</td><td>5년</td></tr>
<tr><td>85㎡초과</td><td>3년</td></tr>
<tr><td rowspan="2">그 외</td><td>85㎡이하</td><td>3년</td></tr>
<tr><td>85㎡초과</td><td>1년</td></tr>
</table>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22.)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1순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로 한정)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22.) 현재 해당건설지역(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을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183일을 초과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거주로 불인정되나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는 1순위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혼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의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 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규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ptmom2-dmapt.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주택전시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사전방문예약 신청 후 실제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1순위 해당	일반 1순위 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 정	11월02일(월)	11월03일(화)	11월04일(수)	11월05일(목)	11월11일(수)	11월12일(목)~ 11월20일(금)	11월23일(월)~ 11월26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 (10:00 ~ 16:30)	주택전시관 방문 (10:00 ~ 16:30)
장 소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10:00~14:0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제출일정을 필히 예약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트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43484호(2020.10.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A-3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27층, 14개동 총 1,1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56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11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2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7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2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1194	01	059.9701A	59A	59.9701	20.3433	80.3134	28.9113	109.2247	43.1604	218	23	22	43	15	7	110	108	12
		02	059.7056B	59B	59.7056	19.5740	79.2796	28.7838	108.0634	42.9700	346	37	34	68	24	10	173	173	14
		03	059.9845C	59C	59.9845	19.7068	79.6913	28.9183	108.6096	43.1708	166	17	16	34	12	5	84	82	9
		04	074.7660	74	74.7660	22.3940	97.1600	36.0444	133.2044	53.8090	250	27	26	49	18	7	127	123	10
		05	084.9718	84	84.9718	25.4898	110.4616	40.9646	151.4262	61.1541	154	8	14	32	10	4	68	86	6
	합 계										1,134	112	112	226	79	33	562	572	51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생 각각의 분양면적(전유면적+공유면적=시설별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701A	059.7056B	059.9845C	074.7660	084.9718
약식표기	59A	59B	59C	74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구분	층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1차	2차	1회(10%)	2회(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1.02.16	2021.03.16	입주시
59A (218세대)	301동, 304동, 309동, 310동, 312동 (2,3호), 305동(3,4호)	1층	12	68,421,000	152,079,000	220,500,000	10,000,000	12,050,000	22,050,000	22,050,000	154,350,000
		2층	12	71,834,000	159,666,000	231,500,000	10,000,000	13,150,000	23,150,000	23,150,000	162,050,000
		3층	12	74,007,000	164,493,000	238,500,000	10,000,000	13,850,000	23,850,000	23,850,000	166,950,000
		4층	12	75,248,000	167,252,000	242,500,000	10,000,000	14,250,000	24,250,000	24,250,000	169,750,000
		5층이상	170	75,868,000	168,632,000	244,500,000	10,000,000	14,450,000	24,450,000	24,450,000	171,150,000
59B (346세대)	302동, 303동, 308동(1,2,3,4호)	2층	12	71,834,000	159,666,000	231,500,000	10,000,000	13,150,000	23,150,000	23,150,000	162,050,000
		3층	12	74,007,000	164,493,000	238,500,000	10,000,000	13,850,000	23,850,000	23,850,000	166,950,000
		4층	12	75,248,000	167,252,000	242,500,000	10,000,000	14,250,000	24,250,000	24,250,000	169,750,000
		5층이상	262	75,868,000	168,632,000	244,500,000	10,000,000	14,450,000	24,450,000	24,450,000	171,150,000
	305동(1,2호)	3층	2	73,696,000	163,804,000	237,500,000	10,000,000	13,750,000	23,750,000	23,750,000	166,250,000
		4층	2	74,937,000	166,563,000	241,500,000	10,000,000	14,150,000	24,150,000	24,150,000	169,050,000
		5층이상	44	75,558,000	167,942,000	243,500,000	10,000,000	14,350,000	24,350,000	24,350,000	170,450,000
59C (166세대)	301동, 304동, 312동(4호), 305동(5호)	1층	3	68,421,000	152,079,000	220,500,000	10,000,000	12,050,000	22,050,000	22,050,000	154,350,000
		2층	4	71,834,000	159,666,000	231,500,000	10,000,000	13,150,000	23,150,000	23,150,000	162,050,000
		3층	4	74,007,000	164,493,000	238,500,000	10,000,000	13,850,000	23,850,000	23,850,000	166,950,000
		4층	4	75,248,000	167,252,000	242,500,000	10,000,000	14,250,000	24,250,000	24,250,000	169,750,000
		5층이상	73	75,868,000	168,632,000	244,500,000	10,000,000	14,450,000	24,450,000	24,450,000	171,150,000
	301동, 304동, 309동, 310동, 312동(1호)	1층	2	68,111,000	151,389,000	219,500,000	10,000,000	11,950,000	21,950,000	21,950,000	153,650,000
		2층	3	71,524,000	158,976,000	230,500,000	10,000,000	13,050,000	23,050,000	23,050,000	161,350,000
		3층	5	73,696,000	163,804,000	237,500,000	10,000,000	13,750,000	23,750,000	23,750,000	166,250,000
		4층	5	74,937,000	166,563,000	241,500,000	10,000,000	14,150,000	24,150,000	24,150,000	169,050,000
		5층이상	63	75,558,000	167,942,000	243,500,000	10,000,000	14,350,000	24,350,000	24,350,000	170,450,000
74 (250세대)	311동, 313동(1,2,3,4호)	2층	8	85,612,000	190,288,000	275,900,000	10,000,000	17,590,000	27,590,000	27,590,000	193,130,000
		3층	8	87,784,000	195,116,000	282,900,000	10,000,000	18,290,000	28,290,000	28,290,000	198,030,000
		4층	8	89,335,000	198,565,000	287,900,000	10,000,000	18,790,000	28,790,000	28,790,000	201,530,000
		5층이상	176	90,266,000	200,634,000	290,900,000	10,000,000	19,090,000	29,090,000	29,090,000	203,630,000
	314동(1,2호)	2층	2	84,060,000	186,840,000	270,900,000	10,000,000	17,090,000	27,090,000	27,090,000	189,630,000
		3층	2	86,232,000	191,668,000	277,900,000	10,000,000	17,790,000	27,790,000	27,790,000	194,530,000
		4층	2	87,784,000	195,116,000	282,900,000	10,000,000	18,290,000	28,290,000	28,290,000	198,030,000
		5층이상	44	88,715,000	197,185,000	285,900,000	10,000,000	18,590,000	28,590,000	28,590,000	200,130,000
84 (154세대)	306동(1,2,3,4호), 307동(1,2호)	2층	6	97,062,000	215,738,000	312,800,000	10,000,000	21,280,000	31,280,000	31,280,000	218,960,000
		3층	6	99,544,000	221,256,000	320,800,000	10,000,000	22,080,000	32,080,000	32,080,000	224,560,000
		4층	6	101,406,000	225,394,000	326,800,000	10,000,000	22,680,000	32,680,000	32,680,000	228,760,000
		5층이상	136	102,647,000	228,153,000	330,800,000	10,000,000	23,080,000	33,080,000	33,080,000	231,56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동주출입구 등 주거 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의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는 금액이며, 현장 공정상 발코니 확장은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 비확장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60조)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이 되어 발코니 미확장 선택을 하실수가 없으며, 계약 시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안내에 따라 추가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발코니확장 계약은 통합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 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열차단필름), 가전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비스포크 냉장고, 전기쿡탑)]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품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주민등록표등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59C	74	84	합계
기관추전	국가유공자		3	5	2	4	1	15
	장애인	경기도	4	6	4	5	2	21
		인천시	3	5	2	3	1	14
		서울시	3	5	2	4	1	15
	장기복무제대군인		3	5	2	4	1	1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3	5	2	4	1	15
	중소기업근로자		4	6	3	3	1	17
	계		23	37	17	27	8	112
다자녀가구	경기도 거주자(50%)		11	17	8	13	7	56
	기타지역 거주자(50%)		11	17	8	13	7	56
	계		22	34	16	26	14	112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우선공급(75%)]		33	51	26	37	24	17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 [일반공급(25%)]		10	17	8	12	8	55
	계		43	68	34	49	32	226
생애최초			15	24	12	18	10	79
노부모부양			7	10	5	7	4	33
합 계			110	173	84	127	68	56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0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table>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평택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r>
<tr><td row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d><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1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1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평택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공급(단, 경쟁 발생 시 평택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함),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50%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한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22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8,905,542원 ~ 11,577,20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10,686,650원 ~ 12,467,75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7% 이내) : 7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자로 아래 ①~⑤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초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주택(분양권등)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함(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함)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함
- 또한 소득세 납부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경우에만 인정 함(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 되지 않음)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납부한 소득세를 통산하여 적용하기로 함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단위 : 원)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30%이하(민영주택)	7,221,478원이하	8,094,245원이하	9,019,860원이하	9,872,308원이하	10,724,756원이하	11,577,203원이하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3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 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 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표1]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은행 창구 접수시 공급신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

구 분	평택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0. 11. 02.(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0. 11. 03.(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1순위(기타지역)	2020. 11. 04.(수) 08:00~17:30		
	2순위	2020. 11. 05.(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미혼인자녀(입양포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원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
	O		주민등록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초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0. 11. 11.(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1.23.(월) ~2020.11.26.(목) • 장소 -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주택전시관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0-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당첨자로 선정 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상기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적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이 해제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해당되나, 1순위 당첨자의 경우 해당 없음)**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1.11.(수) ~ 2020.11.20.(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1.1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0.11.23.(월)~2020.11.26.(목) (10:00~16:00)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0-1번지	031-651-7733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하나은행**	**415-910024-93804**	**우리자산신탁(주)**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O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 현금 수납 불가)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O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사항 포함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배우자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과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적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이 해제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해당되나, 1순위 당첨자의 경우 해당 없음)**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의 해제가 가능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가 알선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시행위탁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위탁사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시행위탁사에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시행위탁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연체 이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시행위탁사에게 제기 할 수 없음.
• 시행위탁사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는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표준사업약정 조건에 의거,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계약금 1차, 2차)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시행위탁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위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안내

■ 발코니 확장

①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2.16	입주지정기간
59A	15,730,000	1,573,000	3,146,000	11,011,000
59B	15,950,000	1,595,000	3,190,000	11,165,000
59C	15,950,000	1,595,000	3,190,000	11,165,000
74	17,380,000	1,738,000	3,476,000	12,166,000
84	18,480,000	1,848,000	3,696,000	12,936,000

②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415-910024-94404**	**우리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 및 기타 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주택형별 가전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의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③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본 아파트는 공정확인서상(2020.09.30.,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실행 공정률 약 63% 이상의 공정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비,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분은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음
- 상기 확장 비용은 외부 발코니 샤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가전옵션 및 별도계약품목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가전 유상 옵션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제조사
59A, B, C형	거실+침실1(안방)	3,740,000	삼성
	거실+침실(안방)+침실2+침실3	6,974,000	
74형, 84형	거실+침실1(안방)	3,905,000	
	거실+침실(안방)+침실2+침실3	7,304,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타입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에어컨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응축수 배수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및 미선택 세대의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용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유상)선택품목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사양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선택 제품의 사양과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② 주방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하이브리드(ERA-BT030)	990,000	SK매직
비스포크(냉장고+변온냉장고)	RR39T7685AP + RZ24T5640AP	2,860,000	삼성

- 상기 주방 가전옵션은 전 주택형이 선택 가능함.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음.
- 비스포크 냉장고 전면 패널의 색상은 1년단위로 변경되므로 비스포크 제품 계약자의 색상 선택을 위해 입주 6개월전 별도의 안내 예정임.

③ **기타** 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74	84	설치위치	비고
열차단필름	1,980,000	1,980,000	1,980,000	2,200,000	2,420,000	샤시 유리	
안전방충망	2,420,000	2,420,000	2,420,000	2,640,000	2,970,000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열차단 필름은 내창 실내면(1면)에만 시공되며 발코니가 있는 침실은 발코니창에만 시공됨
- 유리 폭이 필름 폭(1.5m)이상의 창(거실창 등)시공이 이어붙임으로 시공됨
- 열차단 필름의 특성상 인공 조명에 의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공 환경의 특성상 유리면과 필름 사이에 일부 먼지와 작은 기포가 생길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처리는 불가함

④ 주택형별 주방가전 별도계약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주택형별 가전 유상옵션 납부계좌	**하나은행**	**415-910024-95104**	**우리자산신탁(주)**

- 주택형별 가전 유상옵션의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주택형별 가전 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형별 가전 유상옵션 중도금·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 및 가전 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 및 가전 유상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아파트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 및 가전 유상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 및 가전 유상옵션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함.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 유상옵션의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함.
-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일정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함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8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1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카페,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실내골프연습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9 유의사항

■ **세대 내부**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기타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 사양 이상으로 설치됨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있으니 계약전 확인바람
-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50mm로 시공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노출 배수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배수배관 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침실, 욕실. 세탁실 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됨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실외기실,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의 노출된 부위를 확인바람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됨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음(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비상시 대피구역 사용을 위해 물건적치를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피공간의 외부 창호를 항시 닫힌 상태로 유지바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욕실에는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인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자연환기 방식이 적용됨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 및 세탁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됨
- 안방발코니와 주방발코니의 일부 벽면에 결로저감을 위한 단열마감재가 설치됨
- 59B, 59C, 74, 84형 세대 침실 2, 3번간 벽체는 가변형 벽체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이 완료되어 해체 요청 할 수 없음
- 비내력 벽체는 실별에 따라 습식, 건식 또는 골조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고시지역이며 평택에너지서비스㈜가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임**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붙박이장,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마루 마감재 미 시공 등)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팟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주방상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색상 및 재질 변경 없음, 동급이상 적용),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등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나, 샤워부스 바닥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일부를 사용하여 주방가구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계약자의 개별 선호도에 따른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E/V공용홀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음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 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의해 한해 설치됨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재품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중문은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음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타일은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됨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 지지로 시공
- 본공사 시 코킹 시공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상판, 화장대상판(인조석류), 현관디딤판, 욕실선반(엔지니어드스톤류)등은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음맞댄면에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입주자의 별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함
- 거실 아트월 하부 벽면,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됨
- 내부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 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함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 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공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트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타일,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2020년 09월 30일 기준 63.995% 실행공정률의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이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발코니 확장계약은 필수 계약 사항임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학원차량 대기장소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01동 인근 지하층에는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305동 인근 지하층에는 열교환실이 설치되어 소음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외부(304동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감압시설(정압기)이 설치됨
- **308동 지하층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썬큰이 위치하여 보행자 통로,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308동 전면에는 어린이집 및 맘스카페, 놀이터가 위치하여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307동 1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며 주변으로 부속정원이 설치됨에 따라 사용상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부출입구 주차장램프를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주차장 차로유효 높이는 2.3m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함(주차면 높이 기준 2.1m 이상)**
- **302동 전면에 인접한 곳에 학원차량 대기장소가 위치하여 소음 및 매연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1. 이동통신 설치 예정 위치 : 305, 308, 311, 314동 옥상층, 지하 1층 통신실 : 302, 306, 308동
- **311, 313동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옥외 진입통로가 설치되어 이를 통행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주출입구 램프 주변 301, 302동과 부출입구 램프주변 312, 313동 주변은 지하주차장 진출입에 의한 경광등 소음,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시설용 (주민공동시설 외)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천창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계단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 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방풍문이 설치되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구간,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호수별 최고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 위치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 등은 관계기간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1층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제습기 및 지상1층 홀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됨**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에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높이 및 직경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1층 필로티에 구역별로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각 동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음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술장식품 설치는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외부 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 및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로 1~2층 필로티 설치로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며, 각 동 필로티 내 각종 설비용 배관 설치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실과 인접한 세대 또는 기계실과 인접한 최상층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 - 크기는 변동될 수 있음)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방음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남측구간 고저차가 (약2.4m)있고, 경사도로 설치로 이용상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내 남측 302동, 303동, 310동, 311동, 312동, 313동 전면 지상1층에는 지상주차장이 위치하여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함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캐트 설치위치에는 수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치라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소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소방법에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마감되며, 석재와 페인트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의 석재 적용 범위(층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범위는 평택시 경관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임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 상이함
- 장애인 편의시설은 인허가 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 배치 위치,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음
- 본 건축물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용 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 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302동, 307동, 308동, 309동, 311동의 저층부)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일부세대는 조망권 침해될 수 있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301,309동 인근 지상에는 멀티코트가 설치되며, 지하에는 기계실, 저수조, 열교환기실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 학교 등 교육시설

- 단지 인근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초)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서측 지상1층에 위치한 3개소 주차구역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역임**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함**

■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구조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음(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서측에 317번 지방도, 쌍용자동차 공장이 위치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동측으로 중학교부지(-0.7m 레벨차 발생) 및 체육공원(-3.4~-0.9m 레벨차 발생), 저류지(-5.4~-8.4m 레벨차 발생)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바람**
- **단지북측. 남측, 서측 외부에 공공 공지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단지와 주변도로와의 레벨차가 발생하며, 높이는 계획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 (314동 전면부) 동삭교차로에 케이블헤드 철탑 1기가 위치하고 있으니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조경석 및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3면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한 공공 공지, 체육공원은 단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레벨차이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은 예시사항으로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감압시설(정압기, 5m×5m)이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진행바람**
- **단지 남측으로 45번 국도가 위치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련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서측 완충녹지와 317번 지방도 경계부 일부구간에 방음벽(높이 6m)이 설치되며,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남측 완충녹지와 45번 국도 경계부 일부 구간에는 방음벽(높이 3m)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음**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방시설 및 환기구(급/배기)는 본 공사 시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10 기타 계약자 안내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설계조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 제7조 제2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공동주택
2. 신 청 자: 아뮤티 유한회사
3.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418-6번지 외 25필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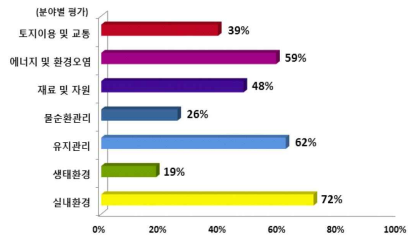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120g/㎡]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공동주택	인증번호	:	KGBC-C-a-432
건 축 주	:	아뮤티 유한회사	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공(예정)일	:	2021.07.31.	유효기간	:	2018.12.04.~사용검사일까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418-6번지 외 25필지			
층 수	:	지하1층, 지상27층			
연 면 적	:	135,975.5917㎡	인증 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설 계 자	:	㈜새천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18년 12월 4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공동주택	인증번호	: 18-주-에-1-1095
준공연도	: 2021년 07월 31일	평가자	: 김종희
주 소	: 경기 평택시 칠원동 418-6번지외 25필지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 지하1층 / 지상27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135975.5917(㎡)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새천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106.7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28.8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6.2	75.1	58.7	12.9
급탕	30.7	40.0	29.5	6.6
조명	19.8	19.8	54.4	9.3
환기		0.0	0.0	0.0
합계	106.7	134.9	142.6	28.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됨[✔]설치되지 않음)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신청접수번호 : m-RAPA-1904-2159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산 418 - 6 외 25필지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옥상층-305동,308동,311동,314동
중계장치 설치 위치	옥상층-305동,308동,311동,314동 지하1층-통신실(302동,306동,308동)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건본주택 내 "상호협의결과서" 게시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 ※ 공사요청일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0년 10월 05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아뮤티유한회사	이상주
대리인	(주)한국RFT엔지니어링	하상철 (인)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내용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0-101-0010700호	90,070,2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 것으로 한다.

※ 사업주체가 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시공회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사로부터 시공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상 호	㈜진광건설엔지니어링	㈜대경기술단	㈜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금 액	2,170,478,200	568,878,000	55,000,000	302,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회사
상 호	동문건설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동문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8층(하남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8층(하남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0368426	110111-2003236	110111-0368426

▶ 관리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사인 동문건설㈜가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에 시행권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동문건설㈜이며, 우리자산신탁㈜는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인 동문건설㈜, 시행수탁사인 우리자산신탁㈜, 시공사인 동문건설㈜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우리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로만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사,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시공상 하자 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동문건설㈜이 부담하며, 계약자는 우리자산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시점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수탁사인 우리자산신탁㈜가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시행위탁사 겸 수익자인 동문건설㈜에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의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소유권이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동문건설㈜가 부담하고 계약자는 사업주체인 우리자산신탁㈜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우리자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자의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금액 및 공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우리자산신탁㈜의 의무가 아니며, 시행위탁사인 동문건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0-1번지**(☎031-651-77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년 11월 02일 (월)**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청약(해당지역)**	**2020년 11월 03일 (화)**
	1순위 청약(기타지역)	**2020년 11월 04일 (수)**
	2순위 청약	**2020년 11월 05일 (목)**
당첨자발표		**2020년 11월 11일 (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		**11월 12일(목) ~ 11월 20일(금)**
정당계약		**11월 23일(월) ~ 11월 26일(목)**

총 1,134세대 (전용 59, 74, 84㎡)	**분양문의 (☎031-651-7733)**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10-1